광진구 중곡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련 -

[시행 2018.3.28.]
[일부개정 2018.6.27.]
[일부개정 2018.12.17.]

제1조(명칭) 본 협의체는 “중곡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"(이하 "보장협의체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보장협의체는 민·관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,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·지원함으로써,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 및 기능)

①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.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.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.(부위원장 1인을 둔다)

② 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동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2.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・실천적 의지가 있거나, 지역내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・개인
3. 지역내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한 영업주 및 관련 직업을 가진 자

③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
1.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적·물적 복지자원 발굴
2.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·지원
3.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한 공동 지역특수사업에 대한 논의 및 추진방안 모색
4. 어르신, 아동,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추진

제4조(권리와 의무)

① 위원은 본 세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하며,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.

②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정보를 보장협의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③ 협의체는 협의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한다.

④ 협의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

① 위원의 해촉은 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3. 보장협의체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4.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회의 및 의사)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① 정기회는 격월마다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사례관리는 즉시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문제해결를 위해 관련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.

④ 협의체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
⑤ 협의체 복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기(담당자)를 둔다.

제8조(회의록 작성)

① 보장협의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2. 회의 참석자 명단
3. 협의사항 및 결과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·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다음 회의 때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세칙 개정) 본 협의체의 운영세칙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. 개정된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